

**행정처분기준** 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(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(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라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 거 법 조 문	행 정 처 분 기 준				
		구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가.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·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법 제9조제1항제1호		사업장 폐쇄			
나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,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,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	법 제9조제1항제2호의 2		사업정지 1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		

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의 만료 및 「어 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 된 경우							
다. 유·도선사업자, 선 원(인명구조요원을 포 함한다), 그 밖의 중 사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나 주의의 무 태만 등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	법 제9조제 1항제3호	사망사고 발생 시 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	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2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	
라.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 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조제 1항제4호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2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	
마. 「선박안전법」, 「선박법」, 「선박직 원법」, 「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환경관 리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조제 1항제5호	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	
바. 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신고(유·도선사업 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하는 신고에 한정한다)를 하지 않 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	법 제9조제 1항제6호		사업장 폐쇄				

<p>신고를 한 경우</p> <p>사. 법 제3조제1항(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, 법 제3조의3제3항, 법 7 조제1항, 법 제32조제1항, 법 제3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</p>	<p>법 제9조제1항제6호</p>					
<p>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	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
<p>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</p>	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	
<p>아.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9조제1항제7호</p>	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
<p>자.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</p>	<p>법 제9조제1항제7호의 2</p>	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
<p>차.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(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·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	<p>법 제9조제1항제8호</p>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장 폐쇄		